

# 규 칙

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「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」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.

순천시의회 의장



공공 행정관

2024년 1월 31일

순천시의회 규칙 제63호

붙임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



##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

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가입하여야 한다”를 “가입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2년간”을 “1년간”으로 한다.

제9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심의결과를”을 “심의 후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승인을”을 “승인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, 의장은 연구모임에 통지해야 한다.

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중 “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지원 통보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”를 “연구모임은”으로, “별지 제5호”를 “별지 제9호”로 한다.

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지원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의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등록신청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의원은 1개 이상 2개 이하 연구모임에 <u>가입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등록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가입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4조(등록취소)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모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2년간</u> 연구활동 실적이 전무한 경우</p>	<p>제4조(등록취소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1년간</u> ----- ---</p>
<p>제9조(심의사항)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<u>제1항의 심의결과</u>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,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9조(심의사항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심의 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연구계획의 변경) 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이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</p>	<p>제12조(연구계획의 변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제출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 
받아야 한다.

<신 설>

② (생 략)

제13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
등) <신 설>

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 
지원 통보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  
에서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  
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5  
호 서식에 의한 의원 연구활동 결  
과보고서 및 지원받은 경비의 사  
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 
한다.

② ~ ⑤ (생 략)

----- 승인 후  
운영위원회의 심의를 -----  
-----.

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회  
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 
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, 의  
장은 연구모임에 통지해야 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13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
등) 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  
은 지원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의  
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의 범  
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② 연구모임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별지 제9호  
-----  
-----.

③ ~ ⑥ (현행 제2항부터 제5항  
까지와 같음)